

의안번호	2219904
의 퇴 인	김태규의원
회 답 일	2026.10.8.
추 계 번호	26D34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을 1일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36시간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72억 1,300만원, 2030년 1,818억 2,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690억 3,400만원(연평균 538억 7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합계	연평균
선거일 1일 연장 ·투표시간 확대 (안 제34조·제155조 등)	-	87,213	-	181,821	-	269,034	53,807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선거일 1일 연장·투표시간 확대(안 제34조·제155조 등)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둘째 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으로 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재외선거, 보궐선거는 제외하기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선거일)·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155조(투표시간)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일을 현행 수요일 1일에서 수요일과 그 다음 날 2일로 1일을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등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 1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	의무규정
3	안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제153조의2(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신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회송용 봉투와 함께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3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 23일에서 24일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14일에서 15일로 1일 연장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4조(선거일)·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155조(투표시간)	○	—
2	안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등	X	운영일수가 2일에서 1일로 줄어 운영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1일에 투표 수요가 집중되어 부재자투표소와 투표관리인력 확충 등의 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소요 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제153조의2(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신설	X	부재자투표신고 인원, 부재자투표용지 발송·회송 우편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33조(선거기간)	—	선거기간 연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도 연장되나 후보자 선거비용은 법정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되고, 선거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는 기존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선거일 1일 연장·투표시간 확대’에 한정하여 추계
 -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36시간으로 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재외선거, 보궐선거는 제외
- 본 추계에서는 선거일 1일 연장·투표시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항목을 투표소 사례금,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으로 한정하여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활용하여 투표관리 관련 내역에서 선거일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도출
 - 투표관리요원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에 따른 1일 단위 정액 수당이고 야간근무 가산은 현행 법령·예산에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않으며, 36시간 연속 투표는 12시간 근무조 3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투표관리요원은 추가 2개 근무조분(2일분)을, 투표소 사례금과 교통편의 제공은 추가 1일분을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3%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거일 1일 연장·투표시간 확대(안 제34조·제155조 등)

-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1일을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둘째 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투표소 사례금,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에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 투표관리요원 인원,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된 차량 및 보조인 수에 각 항목별 단가와 연장일수(투표소 사례금·교통편의 1일, 투표관리요원 2일분)를 곱하여 산출
 - (투표소 사례금) 2028년 14억 2,600만원, 2030년 28억 7,600만원으로 추정
 - 직전 공직선거별 투표소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8회) 14,465개소, 국회의원선거(2024년 제22대) 14,259개소, 대통령선거(2025년 제21대) 14,295개소
 - 투표소 사례금은 1일 기준 1개소당 1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표 2] 투표소 사례금 추정: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투표소 수(a, 개소)	-	14,259	-	28,760	-
1개소당 사례금(b, 만원)	-	10	-	10	-
추가재정소요 (=a×b×1일, 백만원)	-	1,426	-	2,87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2028년 855억 4,100만원, 2030년 1,784억 5,300만원으로 추정
 - 투표관리요원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으로 구분되며, 1일 기준 수당은 각각 19만원, 13만원, 10만원이고 식대는 21,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
 - 36시간 연속 투표에 따른 야간 교대 인력을 고려하여 2일분을 적용

[표 3]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추정: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인원 (a, 명)	투표관리관	—	14,259	—	28,760	—
	투표사무원	—	125,295	—	317,272	—
	투표참관인	—	172,253	—	291,324	—
수당과 식대 (b, 원)	투표관리관	—	211,000	—	211,000	—
	투표사무원	—	151,000	—	151,000	—
	투표참관인	—	121,000	—	121,000	—
추가재정소요 (=a×b×2일, 백만원)	투표관리관	—	6,017	—	12,137	—
	투표사무원	—	37,839	—	95,816	—
	투표참관인	—	41,685	—	70,500	—
	합계	—	85,541	—	178,45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2028년 2억 4,600만원, 2030년 4억 9,200만원으로 추정
 - 2024년 국회의원선거(제22대) 시 장애인 이동차량 수 및 활동보조인 인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인원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장애인 이동차량 504대, 활동보조인 504명, 교통편의차량 동승원은 1,200명이고 1일 기준 사례금은 장애인 이동차량 20만원, 활동보조인과 동승원은 85,000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

[표 4]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추정: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수량 (a, 대, 명)	장애인 이동차량	—	504	—	1,008	—
	활동보조인	—	504	—	1,008	—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	1,200	—	2,400	—
사례금 (b, 원)	장애인 이동차량	—	200,000	—	200,000	—
	활동보조인	—	85,000	—	85,000	—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	85,000	—	85,000	—
추가재정소요 (=a×b×1일, 백만원)	장애인 이동차량	—	101	—	202	—
	활동보조인	—	43	—	86	—
	교통편의차량 동승원	—	102	—	204	—
	합계	—	246	—	49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을 1일 연장하고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72억 1,300만원, 2030년 1,818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 선거일 1일 연장과 투표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투표소 사례금	—	1,426	—	2,876	—
투표관리요원 수당과 식대	—	85,541	—	178,453	—
장애인 등 교통편의제공 관련 비용	—	246	—	492	—
합계	—	87,213	—	181,82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선거일 연장 시 재외선거,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투표관리요원 수당에 야간근무 가산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